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.

발 의 자 : 이달희 · 안철수 · 김예지
김은혜 · 김기웅 · 서범수
최보운 · 유용원 · 고동진
강선영 · 서천호 · 김상훈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,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.

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‘형사절차’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,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음.

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

무적으로 선정하여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제6항 신설).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검사는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「헌법재판소법」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⑦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하여 「헌법재판소법」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때에 제6항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